

#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항공기상청 공고 제2023-3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항공기상청장

## 1. 최종합격자 명단

구분	인원	응시번호	성명
기간제 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1명	003	박○화

\*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2.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 제출기한: 2023. 11. 9.(목)
- 제출방법: 등기우편
  -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10호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1부
  - 사진(3cmX4cm) 1매
  - 이력서 [서식1]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2]
  - 공정채용 확인서 [서식3]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서식4]
-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채용의사가 없을 경우 [채용 포기서(서식5)] 작성 후 우편 제출

## 3.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타 문의는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032-740-2803)으로 연락



## [서식2]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로 채용됨에 있어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3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항공기상청장 귀하

## [서식3]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17호서식]

# 공정채용 확인서

본인은 기상청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인)

항공기상청장 귀하

[서식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 제19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u>공직자</u>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서식5] 채용 포기서

[별지 제16호서식]

## 채용 포기서

채용명	2023년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성명		응시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귀 기관에 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항공기상청장 귀하